

## < 녹 취 전 문 >

과제명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변정일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		
면담자	배보운	면담장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
면담일시	2017. 10. 19.	회차	1회차

### 1. 임명 배경 및 주요 업무

면담자: 이번 면담은 2017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구술하실 분은 변정일(邊精一) 초대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면담자는 배보운(裴輔允)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에서 2017년 10월 19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합니다. 구술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님으로 임명되셨는데 당시의 소회와 함께 초대 사무처장님으로서 주력하셨던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네. 제 6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생겼고,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이 선정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가 매우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988년 9월 25~6일 경에 뜻밖에 조규광(曹圭光) 헌법재판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며칠간 생각 끝에 한 번 해 볼만 한 일이겠다 판단을 해서, 또 내가 해온 정치나 법조 양 쪽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이겠다,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초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이 되고 보니까 헌법위원회 시절부터 근무했던 사무처 인력이 여섯 사람이 있었고요. 그 외에 재판관실, 헌법재판소장실에 근무하는 비서 몇 분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은 정동빌딩에 한 개 층을 전부 쓰고 있었고, 또 한 개 층은 상임재판관 다섯 분이 그냥 한 방에, 집합적으로 모여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독자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헌법재판소 예산안은 헌법위원회 예산안으로서 경제기획원에서 보낸 예산안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사 마련도 시급하고, 헌법재판을 뒷받침 할 사무처에 인력, 특히 심판 사무 인력의 충원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내리는 데 여러 가지 연구를 도와드릴 연구 인력도 필요했구요. 헌법재판관

이 일하는 데 필요한 비서실도 마련이 돼야 되고, 비서실 인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헌법재판 관련 제반 제도 규정을 만드는 것도 시급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은 예산인데, 헌법위원회 예산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변화된 헌법재판소 위상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청사 마련도 아주 시급했죠. 이 모든 것이 다 시급했기 때문에 특히 어느 분야에 주력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오래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도 하면서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저를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으로 인선한 취지는 요컨대 법원, 국회, 청와대 등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 얘기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중복이 됩니까라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나를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분야에 특히 주력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면담자: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헌법위원회 직원이 재판부에만 구성이 돼있고 사무처장님 한 분 계셨고. 말하자면 재판부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사실 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위원회에서 남아있는 인력인데, 헌법위원회는 다 아시다시피 당시 5공화국 때는 거의 휴면 기관화 되면서 한 건도 재판을 하지 않은 상황, 수십 년 간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은 듭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2. 청사마련 과정

면담자: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인력 조직을 확보하시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겠습니다만, 당시 설립 초기에 청사마련에도 아주 힘을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마련과 관련된 노력과 과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예. 우선은 정동빌딩에 있는 게 너무 모습이 초라해서요. 우선 임시 청사라도 빨리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하다가 결국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건물로 쓰던 을지로 6가에 있는 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가지고 내부 수리하고 재판관실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1988년 그 해 헌법재판소 개소되고 나서 3개월 만이네요, 제가 가서 두 달 반 만에 그 건물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88년 12월 27일날 개청

식을 했죠. 모든 신문이 개청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때 사진을 보니까 헌법재판소 개청식,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 놓았더군요. 그렇게 개청식을 해서 재판소장실, 재판관실, 사무처에 인력들이 근무할 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거는 국가 예비비 가지고 충당을 했고요. 88년도 정기국회에서 89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으로 4,950,000,000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2,180,000,000원이 헌법재판소 청사 부지 매입비로 2,000,000,000. 다음에 180,000,000원은 설계 예산입니다. 2,180,000,000원을 우선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부지 매입과 신축과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는 조규광(曹圭光) 소장님께서 몹시 말렸어요.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변 처장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은 맥 빠지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그냥 밀어 붙였죠. 그래서 결국 예산을 따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헌법재판소 청사를 어디다 놓는 것이 합리적이나. 두 가지 기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못지않은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심장부에 위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라야 되겠다, 그 점에서 보더라도 역시 대한민국 심장부인 세종로나 종로, 을지로 쪽이 돼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워 놓고 위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창덕여고 부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옛날 이조 말엽에 광혜원(廣惠院)이 있던 터였고, 또 경기여고도 있었고, 창덕여고 부지였죠. 그러니까 그 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길 달려들고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지를 사려고 하고 있었고요, 또 서울시교육위원회도 그 땅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었고, 해서 네 개 기관이 경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난처하니까 우선 크던 적던 자기 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빼고, 자기 독립된 청사가 없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자, 그러가지고 5,164평 중에 3,000평은 헌법재판소, 2,000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팔아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두개 기관이 사용하기에는 헌법재판소 위상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상에 맞질 않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기해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회창(李會昌) 대법관께서 겸임을 하고 계셨는데, 매우 깐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누가 가서 말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까마는 헌법재판소 소장님이나 재판관이 가서 얘기한다는 게 적절해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조규광(曹圭光) 소장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다른 데 알아보자”

그랬는데 “아이, 다른 데 알아보는 건 알아보는 걸로 하고, 우선 가서 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약속받아서 이회창(李會昌)대법관실로 갔죠. 가서 만나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매우 시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로 5간가? 거기 이미 남의 빌딩(building)을 하나, 거의 전체를 다 빌려 쓰고 있는 건물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매우 시급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위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조금 더 급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이회창(李會昌) 대법관이 한 30초, 1분 정도?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헌법재판소가 다 쓰는 걸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종로에 남의 건물이지만 쓰고 있는 빌딩(building),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선전하게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기관장 되면 기관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서 설사 양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양보를 안 하는 게 관례고. 또 하더라도 ‘아, 그러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간부들 모아놓고 좀 의논이라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애긴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헌법재판소가 다 쓰시라고, 우린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이렇게 딱 결단을 그냥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헌법재판소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려면 건축고도제한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 그 당시에 고도제한이, 거기가 청와대 옆이라서 10미터인가 12미터인가 그랬어요. 이것을 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20미터로 고도제한을 풀었죠.

면담자: 10미터에서 20미터로.

구술자: 예. 20미터일 겁니다. 그게 풀리니까 89년 12월 1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나고요. 5,164평인데, 그 중에 100평은 백송 때문에 떠났고, 5,064평을 계약을 해서 매수를 했고, 청사 건축 비용은 1989년도에 평당 1,340,0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경제기획원에서. 그게 뭐냐면 중앙 부서의 건축비로 평당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는 이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근데 법원 종합청사가, 서초동에, 얼마에 했냐면 평당 1,700,000원으로 지었거든요. 그 다음, 예술의 전당은 3,50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1,340,000원 하면 이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걸쳐놔야 그 다음 예산을 더 확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은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우선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1990년도 예산안에 결국 헌법재판소 청사 예산이 6,300,000,000원인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1991년 3월에 청사 착공식을 했죠. 그 때 대통

령과 3부요인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한 이후죠. 93년 7월 10일에 준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면담자: 예, 괜찮습니다.

구술자: 헌법재판소 강당과 심판정의 위치, 도서관의 위치였습니다. 그 때 설계과정에서 논란이 치열했는데, 이시윤(李時潤) 재판관께서는 책,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되게 무거우니까.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도서관을 1층이나 지하 강당으로 해야 된다. 근데 내 생각은 1층이나 지하는 심판정과 헌법재판소 강당으로 이용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건물의 안정성은 굳이 1층이나 지하에 안 하더라도 5층으로 올려도 되고, 또 도서관이라는 건 좀 조용하게 5층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이나 강당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장소거든요. 도서관은 공개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강당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데, 헌법학회라든지 공법학회,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거나 총회를 하거나 무슨 학회, 활동을 하는데 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와서 쓰시라고 로비(lobby)를 하면서라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국회 견학가듯이 헌법재판소가 견학 오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견학 오면 헌법재판소에 관한 브리핑(briefing)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우선은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강당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 불편해서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 심판 관계로 오는 당사자나 또 방청을 오는 사람이나 학생들, 학회,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1층으로 해야 된다. 이게 내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장한대로 됐죠. 바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건물이 내가 퇴임한 후지만 건축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권옹호기관,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러한 기능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다.

면담자: 심판정과 강당을.

구술자: 강당을. 1층에 배치했다. 그것이 높이 평가가 돼서 건축대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그 이후에도 실제로 강당은 지금 학회 활동 공간이나.

구술자: 다 쓰고 있죠.

면담자: 다 쓰고 있습니다.

면담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술자: 그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친근한 기관으로 아마 됐을 겁니

다. 예.

면담자: 굉장히 좋아하고, 학회 때마다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구술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면담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예산과 관련해서 초기에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1,300,000,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독립건물로서 나름대로 모양이라든지 위엄이라든지 기능성, 외양성도 갖추고 위엄도 갖추고. 또 실질적으로 기능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준공 때 91년도에 현재에 입사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2년 차에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구술자: 건축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상당히 노력은 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건물 괜찮잖아요? 자재라든지 이런 게 괜찮고. 다만 재판관실, 복도에 깔아놓은 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들터만요. 왜 싸구려처럼 이렇게 해 놨냐고 내가 ○○○ 국장인가 누구한테 뭐라고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하이 고, 처장님, 제발 그 말씀 좀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웃음) 그러더라. 하여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 3. 조직구성과 예산

면담자: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설립 초기의 조직 형성과정이나 또 예산 규모에 대해서, 특히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술자: 예. 우선 사무처에 사무인력, 예산 관련 업무.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인력, 심판 사무 인력, 도서 관리 인력,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하러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분위기가 우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무슨 얘기든지 나한테 와서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어요. 잘 어울려주고, 또 무슨 얘기든지 와서 하면 야단 안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더라도 야단 안치고 시정하라고 할 일 있어도 좋은 말로 하고. 또 재판관 회의에서 (웃음) 깨지는 사무처 직원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시켜서 한 거니까 그 직원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가로막아버리기도 하고. 많이 보호막도 돼주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줬고. 특히 소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판공비의 상당 부분을 직원들 복지비로 지출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수시로 일깨워 주고. ‘그런 데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강조 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소문들이 퍼지면서 외부에서 직원들을 스카우트(scout) 해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히 예산 관련 하여 경제기획원에 당시 내 대학 동기생들 세 명이, 1급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도 하나 있었고. ○○○이는 당시에 이사관이었고요. 그리고 ○○○라고 예산심의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나보다 대학 후배였고. 초기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각 행정부처의 예산은, 우선 총무처에서 전부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법기관이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총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짜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조직은 사실상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쥐야 조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1988년 첫 해에 헌법위원회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헌법재판소 지금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앞으로 그렇게... 헌법위원회가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헌법위원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헌법재판소라고 뭐 갑자기 일이 많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이 대법관에 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때는 법문의 표현이 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도 내가 그 말을 쓰는 건데. 준한다는 말은 말이 준이지, 사실 똑같이 해주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 납득을 시켜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예우를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같이 하도록 우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에 심판사무국, 심판자료국, 공보실, 비상기획관실. 총무과,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조직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을 시켜서 만들어진 겁니다. 직원들 스카우트(scout)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많이들 오더라고. 자기가 오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은 맨 처음에 ○○○이가 먼저 왔는지 ○○○이가 먼저 왔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자체 연구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파견 받는 연구관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관들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검사 연구관은 법무부나 검찰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친정 편들지 않겠느냐. 법원 역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

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연구관 애기가 많이 거론이 됐고, 나도 물론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일반 행정부처에 가 있는 직원을 찾다보니까 ○○○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오라, 오면 당장 한두 달 내는 아니지만 그 기간만 차면 내가 서기관 승진시켜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했죠. 그 다음에 ○○○ 연구관은 법무관 제대할 무렵이에요. 어떤 분의 추천도 있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사람이 깡, 끼가 있어 보이더라고, 생긴 모양이. 지금은 살이 많이 찼지만 그 당시엔 빼빼해가지고. 보니까 성깔이 있어 보여서 그런 타입(type)이 필요하거든요. 초기에는 그랬다고. 책임자다 싶어서 바로 그냥 제대하자마자 했고, 또 연구관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인력확보를 편하게 했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헌법에 관한 한은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1호 연구원이 아마 ○○○ 교수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 일 거예요. 그 다음에 ○○○라고 있었죠?

면담자: 네. 경북대학 교수.

구술자: 경북대학입니까? 거기도 연구원으로 오지 않았던가?

면담자: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구술자: 연구원으로 왔죠? 그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은 됐고. 예산도 이제 그렇게 제법 하느라 했지만 89년도 예산이 4,950,000,000원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청사관련 예산 2,180,000,000원을 빼면 2,800,000,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조직 운영, 인건비 다 합쳐서 2,800,000,000원. 그 다음에 90년도에 가서는 9,660,000,000원 정도 예산이 붙어나긴 했는데 그 중에 6,300,000,000원이 청사 신축비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기관 운영비는 3,300,000,000원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예산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당시 인원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됐다, 그 때 그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면담자: 여러 가지 만드시느라고 고생한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처음에 91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공채로 지원을 하면서 처장님이 면접을 먼저 뵈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처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고 후일 연구관 제도에 대해서도 배려나 이런 것들, 대단히 열정적으로, 푸근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재 오겠다고 결정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 된 기억이 납니다.

구술자: 뒤집어서 말하면 나를 면접하셨구만. (웃음)



면담자: (웃음)

#### 4. 사무행정의 기틀마련

면담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님으로서, 조규광(曹圭光) 소장님 뜻을 받들어서 재판소의 사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데에 힘쓰셨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술자: 예, 헌법재판소 사무행정의 기틀은 물론 사무처장이니까 당연히 힘썼지만, 사실은 최광률(崔光律) 재판관과 이시윤(李時潤) 재판관, 김문희(金汶熙) 재판관, 이런 분들이 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심판 사무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조직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고요. 우리 사무처로서는 심판 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뒷받침 해드리는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 조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 오고 싶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뭐냐면 기관의 위상으로써 자부심도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 내부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주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기관의 위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의 위상이 참 그 때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갔다 오시면 3부요인들을 초청을 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규광(曹圭光) 소장께서 초대를 못 받더라고요. 민정수석비서관한테 가서 한 바탕 했죠. 그랬더니 민정수석비서관이 ‘조금만 참으시라, 지금 다른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 속상하지만 좀 참아 달라.’ 그리고 무슨 국경일 행사 때도 가끔 좌석 배치가 뒤로 밀린다든지, 감사원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쪽 열 비스무리하게 취급되는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아이, 소장님 가지 마십시오.’ 못 가지게도 만들고 그래서 안 나간 일도 있고요. 어떤 행사 때는 기관에서 자리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안 가버린 일도 있고.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아이,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신 일도 있고.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 자꾸 얘기도 했지, 신문 기자들도 동원을 했어요. 이게 속상하잖아요. 기자들을 동원해서 글을 좀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나왔습니다. 내 기억으로 아마 최초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게 제헌절 날일 거예요. 89년 제헌절 날.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풀리기 시작 했어요. 그리고 현재 1주년이 되면서 신문에서 현재 1주년에 즈음한 여러 가지 글들을 기자들이 썼어요. 헌법재판소 소장의 위상, 헌법재판소의 위상, 예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썼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재판관의 상임화, 상임재판관화 하는 문제인데. 이걸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여기서 다시 말 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비상임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재판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상임이다 보니까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일당으로 수당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비상임이다 보니까 연구관, 연구 인력도 활용을 못 하고요, 변호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혼자 깊이 연구도 못 하시고, 우리 스스로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인 헌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이다,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로서 법정에 서면 그냥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헌법재판소 정문을 나서면 변호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헌법재판소 위상에 안 맞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면서 주심도 못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내가 우겨가지고 을지로 6가에 방 하나 마련해드린 거였거든요. ‘방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수위실 옆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재판관 회의 예정된 시간에 딱딱 재판관 회의가 시작이 됩니까? 안 되는 수도 있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말이지. 그니까 속상하시죠, 그 분들도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상당히 주력을 해서 노력을 했고, 그 때 다행히도 법사위원들이 다 동조를 해 주셨고. 또 옛날에 의원생활 같이 했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나의 추천에 의해서 정계에 입문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뒤늦게 91년 11월인가? 그 법안이 통과됐죠. 그렇게 전원 상임이 돼서 헌법재판소 모습을 찾게 되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주로 그런 일들에 애를 많이 썼죠. 특히 헌법재판관이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을 고치고 이런 데 대외적으로 로비(lobby)하는 게 재판관의 성격에도 안 맞고 위상에도 안 맞고요. 가서 설사 로비(lobby)를 해서 그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관이다 보니까 역으로 상대방에서 재판관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무처장이 할 일이다. 바로 이런 거 때문에 나를 사무처장 시킨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뭐 싫다고 안 하고 열심히 했죠.

면담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서 국가에 중요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단심이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고. 따라서 초기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협력을 받고 협조를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일이라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소장님을 대신해서 또 재판관님을 대신해서 처장님이 하실 일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처장님께서도 사법기관 법원에서 일 하셨고, 재야에서 변호사로도 일 하셨고. 입법부에서도 일 하셨고. 그런 경험

이 사실은 초기 헌법재판소의 사무행정의 틀을 잡는 데, 말하자면 재판기관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올바른 판결하는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확보하는 데 처장님 역할이 정말 크셨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실은, 요즘도 화두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재판기관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처장님이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외부에 전하기도 하시고, 또 외부의 이야기를 소장님이나 재판관님께 전하고, 그런 협력이나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혹시 에피소드(episode)나 이런 것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술자: 요새는 국정감사 하는데 소장이 나가시나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 같은 거를 소장이 하나요? 국정감사에서?

면담자: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요즘은 국정감사 시작할 때 나오셔서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시고.

구술자: 네, 인사 말씀.

면담자: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는 사무처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사무처장님이 대신해서 하시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오셔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그런 형식으로. 사무처장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구술자: 그러겠죠? 예.

면담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연장선.

구술자: 그렇죠. 당연히 업무보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신문 보니까 ‘김이수(金二洙) 대행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무슨 국감이 파행됐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서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면담자: 그 형식은 원래 기관장이 하는 것인데, 국민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 하시는 건데, 처장님이 대신 하는 걸로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조인으로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행정도 하시지만 재판 기관의 재판장이신데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후에 예단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해야죠.

구술자: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내가 처장 할 때는 소장 나오라는 소리 자체가 나온 일이 없어요. 나온 일이 없다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국회가 열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만든다고 밤들 새고 뭐 난리야, 가만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왜 하나?’고 하니까 ‘아이, 우리 위원회 때 그렇게 했

습니다.’ 이래. ○○○ 씨가. 그 때 ○○○, ○○○, ○○○ 이 라인(line)들이 국회 담당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이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쓸데없는 짓인데 어떻게 할까. 애쓰는 사람 맥 빠지게 하지 말자 한편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헌법재판에 관한 인식이 좀 부족할 때니까 차제에 공부하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심하게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애 쓰지는 마라’고,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 나중에 만들기는 이만큼 만들어 왔어요. 그거 다 읽어 볼 시간도 없고, 기본적인 거 이제까지 접수 건수, 아직 각하니 본안 판단 안 하고 있는 거 전부 유형 별로 통계자료 먼저 뽑아오라. 그거 하나 달랑 들고 국회 가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온 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었지.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아이고, 뭐 편안해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한편 어느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 기자는 날 모르는 기자인데, 국회 상임위원회 끝나니까 쫓아와가지고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좀 김 빠졌을 겁니다.” (웃음) 그러더라고. 내가 거침없이 답변해버리니까. 그 때 헌법소원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왜 그런 거를 인정을 하느냐. 이게 말이야,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야.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거를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 의원이 특별히. 검찰 출신 아닙니까. 공격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답변 했냐면 “즐기는 게 아니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다른 식구들이 다 조용하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매번 잘못 났다고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검토하는, 판단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런 어른 기관이 하나 있다하면 검사들이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무슨 즐기는 거겠습니까.”

면담자: 우문에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면담자: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주요인사 구술체록 작업에 사실은 조규광(曹圭光) 초대 소장을 모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 소장님께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인터뷰(interview)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처장님께서 옆에서 같이 모시면서 협력해서 하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평소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들은 말씀이나, 같이 의논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외부의 법조인들이 초대 소장님으로서 하시는 역할이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술자: 예.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은 재조에는 한 20년 밖에 안 계셨죠. 나머지는 쪽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셨는데. 어쨌든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이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고, 저도 역시 ‘그런 분이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온 것이 오늘 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세우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이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 이론이라는 게 정립이 사실 안 돼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과거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한 일이 있지만 그거는 깊이 있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의 소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감각으로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헌법재판에는 헌법재판 나름의 독특한 이론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분이 영어하고 프랑스어에 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또 내가 사무처장으로 가서 보니까 독일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여쭙봤더니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독일어를 해야 되겠다고. 몇 달 지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제 좀 보인다.’고, 독일어가. “지금 이거 한 페이지(page) 읽는데 얼마나,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시간은 안 재워서 모르겠는데, 단어 한 서너 개 찾으면 한 페이지(page) 끝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특히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깊이 들어가면 서로 통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과는 전혀 다른. 그네들 말끼리 통하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이구나. 난 그렇게 봤는데, 아마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의 그런 어학 실력과 어학에 대한 감각이 헌법재판이론 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의 탁월한 장점이 뭐냐면 그분은 법조인 생활만 했지, 공무원으로서 권력 있는 기관에 근무해본 일도 없는 분인데,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참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의욕적으로 일 할까봐. 그러다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당할까봐, 너무 짧은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치고 나가면 다른 기관에서 견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도조절을 하면서 좀 하라고 이려시더라고, 근데 처음에 나는 그 말씀 들을 때 좀 답답했어요. 그 어른이 나보다 딱 열여섯 살 위예요. 내가 마흔일곱 살이었고, 그 어른이 63세셨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참 생각하시는게 좀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조금 지나가면서 ‘아, 이 어른 말씀이 맞다.’ 하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상당히 성격이 깐깐한 분이거든요? 집안에서도 엄격하시고, 자기관리도 엄격하신 그런 분인데, 또 직원들 복지 이런 문제를 꺼내면 아주 그냥 너무 말씀을 잘 들어줘요. ‘기관 운영 판공비, 이거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어떻습니

까. 우리 직원들 법원처럼 누가 와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없고, 절간 같은데, 그런 거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써도 되냐고 그래서 써도 된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 풀고. 그런 면이 있고. 또한 편으로는 국경일 같은 때 초대받고 예우 상 문제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결국 참고, 특히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 개성이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재판관 중에 제일 강한 분들일 거예요, 개성이. 참 독특한 분들이었는데, 특히 평결에 있어서는 원 오브 템(one of them)이잖아요. 아홉 명 중에 한 사람에게 불과하잖아요. 외부적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소장이지만, 내부 합의할 때는 아홉 명 중의 한 사람에게 불과한.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평결 과정이나 헌법재판소에 관한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재판관 회의에서 회의를 열게 되면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잘 참으시더라고, 아주 참는 게 눈에 보여요. 이 어른이 참 폭발할 것 같은데도 딱 참고. 그래서 나중에 “잘 참으셨습니다.” 그랬거든. “참아야지, 그럼 어떡해. 내가 폭발해 버리면 처장이 괴로울 텐데.” 그러시고, 또 재산관리 같은 것도 보면, 부동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 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증권하고 예금, 적금, 정기 예금 들어가는 거, 그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 말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대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도 훌륭하셨고. 행동도 가볍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최고의 초대 헌법소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5.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

면담자 : 그럼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서는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 향후 헌법재판소 발전을 위해서 헌법재판제도에 개선,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자 : 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바라는 점 이걸 잘 모르겠고요. 내가 헌법재판소를 떠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지금 27년 쯤인데.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 되고, 근래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국민들 사이에 새롭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요즘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대통령이 세 사람을 임명하고, 국회가 세 사람을 선출하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추천·임명하는 제도를 고치는 기회가 있다면 바뀌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은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사전 의견 조율은 할 수

있겠지만. 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도 마찬가지.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법원 판결의 위헌 심사 가능하나 어찌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근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추천 제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도. 글썄,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딱 좋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좌우간 한번 검토해볼만한 부분이다 싶고. 또 잘 활용되지 아니하는 심판 제도 있잖아요. 권한쟁의라든지, 탄핵심판이라든지. 특히 탄핵심판은, 자주 생길 가능성이 (웃음), 몇 년에 한 번씩 생길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거에 관한 심판 절차, 규정, 이런 거를 잘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이게 하기에 따라서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면담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술자: 예.

면담자: 그리고 아까 초기에 헌법재판소 청사 건립취지를 설명하시면서 1층에 강당을 해서 국민들 사용 편의라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산이나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소개하고 현장 접수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출장소를 몇 개 마련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으신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러한 발상 자체는 아주 좋고요.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를 알리고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건 결국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지켜주기도 하지만 국민 스스로도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기본권 의식, 권리 의식을 함양시키고 배양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상담 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답답한 사람이 오겠죠,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이. 그럼 그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는 경우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담 내용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원성을 들을 소지도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조금 되네요. 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려가 되네요.

면담자: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술자: 네, 수고했어요.